

#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안내문

「예술인생활안정자금(융자) 전세자금대출」 신청 시 아래 안내사항을 잘 확인하여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문의사항: 02-3668-0238~9

## 【시행일정】

구 분	접수방법	기 간	내 용
신청	방문 또는 홈페이지	09.13.~11.05.	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본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※ 온라인 신청접수부터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
본서류 접수	방문		
약정 체결	방문	심사완료 후 3일 이내	-
입주일	-	10.15.~11.26.	입주일* 날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지급

\* 지정입주일: 2021.10.15.~11.26.

## 【대출조건 안내】

- 대출조건: 아파트/연립주택/다세대/단독주택(독채)/전입신고 가능 오피스텔-> **다가구 등 그 외 불가**
- 제한요건 ※ 공통, 임대인, 임차인 **제한요건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추가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개인회생, 개인파산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 및 연체 중인 사람
  - 나. 본인 및 배우자 유주택자
  - 다.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**질권설정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자**
- 한도설정 ※ 각호 중 **가장 적은 금액으로 승인**
  - ㉠ 최고 1억 원 ㉡ 임차보증금의 80% ㉢ 선순위설정액 + 대출신청액 = 재단평가 매매시세 80% 이내

## 【본 심사】※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(심의 최종 승인기준)

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. **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**

- 제출서류 ※ 그 외 재단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
  - 가. 인적서류 ※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발급 분
   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/초본(5년 간 주소변동 포함), 소득금액증명원
  - 나. 개인정보동의서: 인적서류에 생년월일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의 서명
  - 다. 재산세과세증명서(본인 및 배우자): “재산세(주택) 과세사실 없음”이 표시되도록 발급 (미과세증명)
  - 라. 계약서(확정일자),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, 계약금 영수증(보증금 5% 이상 납부)
  - 마. 부동산등기부등본, 건축물 대장(전유부 포함), 부동산 공제증서
  - 바. 대출금위임장 및 포괄위임장 각1부(내방시 작성)
  - 사. 근질권설정계약서(내방시 작성)

## 【주의사항】 **부동산중개업소에 요청**

- 필수사항
  - 가. 계약서 상 특약에 하단 내용 기재
    - 임대인 계좌 표기(예금주, 은행, 계좌번호) ※ 선순위근저당 말소조건일 경우 해당 금액과 말소 내용 표기
- 권고사항
  - 가. 계약서 상 특약에 하단 내용 기재
    - 예술인생활안정자금(융자)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한다.
    - 예술인생활안정자금(융자)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한다.
  - 나. 임차보증금이 재단평가 매매시세 보다 큰 경우에는 다른 전세집을 알아봐주시길 바랍니다.